

예산성과금 시행세칙

제 정 2010. 04. 15

개 정 2010. 11. 08

중복개정 2010. 12. 22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회계규정 제22조의 2조제2항에 의거하여 예산성과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정상적 경비”란 성남문화재단 및 시설의 유지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.
- ② “주요 사업비”란 인건비 및 정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.
- ③ “수입”이란 사업수입금 및 협찬 등 기타 수입금과 같은 자체수익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대상 및 선정절차) 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대상기준은 “별표 1”에 의한다.

② 선정절차는 부서별 추천 후보자 선별 후 예산총괄부서에서 세칙 기준에 의거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최종 후보자를 승인,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5조(예산성과금 지급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산성과금 지급성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 1.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
- 2. 지출절약의 경우 과다 예산 편성 후 절감되었다고 보고되는 사항
- 3. 수입증대의 경우 과소 세입 목표 책정 후 초과 달성되었다고 보고되는 사항
- 4. 제안제도 등 이미 포상이 지급된 사항
- 5. 재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

제 2 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

제6조(설치)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재단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2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
3.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
4.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
5.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영국장, 부위원장은 경영기획부장이 되며, 위원은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. <개정 2010.11.8., 2010.12.22.>

제9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

제13조(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추천신청) 각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시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12월 31



일 진행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

가. 경상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: 해당 사업의 개요(사업내용, 총사업비, 사업기간,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)와 지출절약의 배경·경위·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,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

나. 수입증대의 경우 : 수입증대의 규모 및 내용과 그 증명자료,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

제14조(예산성과금의 규모)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,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1.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20퍼센트

2.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

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“별표 2”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,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③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예산성과금의 심사)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(예산성과금의 지급) ①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심사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제15조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 이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)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 및 결정한다.

제18조(인사상의 특전)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.



제19조(사후 예산조치 등) 대표이사는 인건비,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 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당해 재단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재단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(중복개정)



[별표1]

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대상

(제4조 관련)

구분		대 상 내 용
지출 절약	경 상 비 절 감	예산 절감을 20% 초과 시 (다만, 예산 책정 후 미사용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제외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절감한 경우에만 해당)
	사 업 비 절 감	
수입 증대	세 입 목 표 초 과	세입목표 대비 달성을 30% 초과 시 (세입목표 책정 시 적절하고 합당한 근거에 준함)
	협찬 등 기부금수입	정기적인 후원금 또는 시와 연계된 기관 및 기업 기부금 및 협찬을 제외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치한 경우

※ 제안제도 등 이미 포상이 지급된 사항의 경우는 중복포상을 금함.

[별표 2]

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기준

(제14조 관련)

구 분			지 급 기 준
수 입 증 대	세 입 목 표 초 과	공 연 사 업	수입증대액의 3%범위 안에서 지급
		전 시 사 업	수입증대액의 10%범위 안에서 지급
		기 타 수 익 사 업	수입증대액의 5%범위 안에서 지급
	협 찬 등 기 부 금 수 입		수입증대액의 3%범위 안에서 지급

※ 정확한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


